

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
[] 허가 [] 신고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20일		
신청자	기관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
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		
	주소					
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취급기관	기관명		대표자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	
	주소					
	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(관리책임자)		성명(직위)		전화번호	
	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					
	취급시설	안전등급	[] BL1	[] BL2	[] BL3	[] BL4
		주소				
시설등록번호						
변경 내용	변경 전			변경 후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3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사본 1부 2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취급자의 성명·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이 신청서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의 정보가 신청자의 정보와 동일할 경우에는 ‘상동’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유기간이 영구일 경우, 시작 기간만 작성하고 ‘영구’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